

③ 파주시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 제정이유

지난 3월 29일 법원읍 법원리 일원의 산불진화중 순직한 자에 대한 보상은 근로기준법 및 산림법, 소방법등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지급이 가능하나 그 가액이 지극히 미약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여 별도의 위로 보상금을 지급코자 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

- 동 조례안 제2조에 명시된 보상금의 정의와 지급대상이 되는 순직자를 '98. 3. 29. 법원읍 법원리 일원에서 산불진화중 순직자로 국한하였고,
부칙 제2항에서는 “순직자에 대한 보상금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한시적인 조례로 제정토록 하였음.
- 동 조례안 제3조에서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 보상금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결정토록 하고,
- 보상금지급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집행토록 하고 있는 등 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음.

□ 검토내용

- 순직자는 일용직 산불감시원으로 산불진화 과정에서 맡은 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던 중 당한 제해로 일반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의 사망과 공무로 인한 사상, 질병, 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보장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토록 하고 있고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1호)에서는 순직처리로 예우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 일용직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족보상과 장의비지급이나 소방법에서 정한 유족보상과 장제보상 뿐으로 미약한 실정임.
- 따라서 명약관화한 공무원의 순직임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가 없어 지급치 못하는 실정에서 위로보상금을 지급코자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며,
- 아울러 앞으로 유사사건의 발생시 보상금 지급의 준거가 되도록 한시적인 조례가 아닌 항구적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공무원 제해의 경우 공무상 질병, 사상, 사망등 그 여부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동 조례안의 적용여부등이 논란이 될 수 있어 한시적 조례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참고로 범정보상금의 지급가능 금액은

-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상금은 평균임금의 1,000일분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6,260천원이며, 장의비 2,363천원을 포함하여 28,623천원에 불과하며,
- 산림법(제102조3항) 및 소방법에 근거한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 조례에 의한 지급가능금액은 유족보상금 17,017천원과 장제비 1,418천원을 포함하여 18,435천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각각을 중복 지급할 수 없음을 감안하면, 28,623천원 정도가 범정보상금으로써 지급가능한 금액이라 사료되나,

○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어 동 사례와 같이 산불진화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예비비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 또한, '96년 4월 23일 동두천시 산불발생시 동두천시의 경우 유족과의 합의에서 총액을 118,000천원으로 결정하고 범정보상금, 장의·장제비, 조의금을 제외한 54,000천원의 특별위로금을 예비비로써 지급한 사례가 있음에 파주시에서도 순직자 및 그 유족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별도 한시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됨.

- 끝으로 최근 우리의 임야는 수시로 간벌을 해야할 정도의 울창한 산림상태가 되어 “한국의 산림은 화약고”라고 일컬을 만큼 대형 화재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산불진화에 대한 기법개발과 장비의 현대화, 진화요원에 대한 안전교육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